

東草市公衆化粧室設置 및 管理에 關한 條例案

審 查 報 告 書

1994. 11. 30.

산 업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4년 11월 28일 속초시장

나. 회부일자 : 1994년 11월 28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
('94. 11. 30) 상정,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환경보호과장 엄무남)

가. 제안이유

-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관리소홀시 시민 및 관광객에게 불편을 줄 뿐 아니라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실추가 예상되어
-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국민소득수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설치관리자의 책무(청결유지 및 편의용품 비치) 규정 (안 제3조)
- 공중화장실의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사항 규정 (안 제13, 14조)
- 개선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 명시 (안 제18조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: 없 음

4. 質疑 및 答辯要旨

(답변자 : 환경보호과장 업무남)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○ 관내 공중화장실 개념의 화장실수 ?	○ 국립공원 관리공단관리 화장실, 시장, 터미널, 각 주유소, 시청 등 60개가 넘음.
○ 제5조 설치기준에 적합한 관내 터미널 및 다중이용 화장실 개소수는?	○ 개별법마다 수용능력에 따라 화장실 면적 및 용변기 갯수 기준은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, 이는 일반적인 규정이고, 여건을 감안하여 실제적으로는 클수도 있고 작을수도 있음.

5. 討論 要旨 : 없 음

6. 修正案 要旨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4년 11월 30일 산업위원회 위원장

나. 수정이유 : 문맥과 내용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자구 수정

다. 수정 주요골자

- 제7조(위탁관리등)에서 제1항 "시장·군수가"를 "시장"으로 하고
- 제17조(준수사항) 2호에서 "제16조제3항의"를 제16조제2항의"로 자구 수정

- 7. 審査結果 : 수정안 가결
- 8. 少數意見의 要旨 : 없음
- 9. 其他 必要한 事項 : 없음

첨 부 : 1. 속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1부. 끝.

束草市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에關한條例案에對한修正案

1994. 11. 30.

산 업 위 원 회

1. 修正理由

문맥과 내용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자구수정

2. 修正主要骨子

- 제7조 (위탁관리등) 에서 제1항 “시장·군수가”를 “시장”로 하고
- 제17조 (준수사항) 2호에서 “제16조제3항의”를 “제16조제2항의”로 자구 수정

수 정 안 대 비 표

원	안	수	정	안
제7조 (위탁관리등) ① <u>시장·군수가</u>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·관리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		제7조 (위탁관리등) ① 시장이		
② (생 략)		② (원안과 같음)		
제17조 (준수사항)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		제17조 (준수사항)		
1. (생 략)		1. (원안과 같음)		
2. <u>제16조제3항의</u> 규정에 의한 승인금액 을 초과 징수하지 않을 것.		2. 제16조제2항의		
3. (생 략)		3. (원안과 같음)		
4. (생 략)		4. (원안과 같음)		